

안내사항

1. “체불인원”은 용자신청을 위하여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확인을 요청한 근로자의 수이며, “총 체불금액”은 이들의 체불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2. “체불 임금등 용자금지급대상근로자”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 - 가.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
 - 나.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